

특례(외국국적동포) 고용가능확인서([]발급 []변경)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7일	
주된 사업장 (사업주)	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			②사업자등록번호			
	③사업장명			④대표자			
사업장 개요	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			⑤사업자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)			
	⑥사업장명			⑦대표자			
	소재지 □□□-□□□			연락처	전화번호		
					휴대전화번호		
					팩스		
					전자우편		
	⑧업종			사업내용			
	상시 근로자 수			내국인근로자 / 외국인근로자			
총 명			명 / 명				
가입 보험	[]고용		[]산재	[]건강	[]국민		
신청 내용 (최초 신청시)	내국인 구인노력	구인 인원	명				
		구인 직종	직종() 직무내용() ※구체적으로 적을 것				
		구인 기간	()일 (~)				
		지방고용 노동관서 알선자 면접이력	면접 일시				
			면접 대상자				
	채용하지 않은 사유						
	내국인 구인노력 외 발급요건 충족 여부	[]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에 해당 []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 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[]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[]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[]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					
구인 사항	모집 인원	명		국적	1) 2)		
	학력	최저:	최고:	자격면허	1)		
	전공				2)		
	연령	만 세 ~ 세		한국어 능력	[]상 []중 []하 []관계없음		
	기타 (경력 등)						

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

근로조건	근로시간	제조업, 건설업, 서비스업	시 분 ~ 시 분 (8시간 기준) *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: 시간, 교대제([]2조2교대, []3조3교대, []4조3교대, []기타)			
		농업·축산업	시 분 ~ 시 분, 월 ()시간 * 농번기 (월 일 ~ 월 일): 시 분 ~ 시 분, 월 ()시간			
		어업	월 ()시간			
	근로계약기간	()개월				
	휴일 및 휴게시간	휴일: []일요일 []공휴일([]유급 []무급) []매주 토요일 []격주 토요일 []기타() * 농업·축산업 농번기(월 일 ~ 월 일): []일요일 []공휴일([]유급 []무급) []매주 토요일 []격주 토요일 []기타() 휴게시간: 1일 (분) * 농업·축산업: 근로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()시간 ()분을 휴게시간으로 함				
	임금 및 지급방법	기본급	월(시간, 일, 주)급: ()원 * 농업·축산업 농번기(월 일 ~ 월 일): 원			
		고정적 수당	(수당: 원), (수당: 원)	상여금	(원)	
		수습기간 중 임금	월(시간, 일, 주)급: ()원, (수습기간: []1개월, []2개월, []3개월)			
		월 통상임금	()만원(시간외 수당 등 제외) *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			
		지급방법	[]직접 지급, []통장 입금	지급일	매월	일
숙식제공 여부	숙 박		식 사			
	숙박시설 제공 여부: []제공, []미제공 * 제공 시, 숙박시설 유형([]아파트, []단독주택, []연립·다세대 주택, []아파트 또는 주택에 준하는 시설, []그 밖의 임시 주거 시설)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: []부담(부담금액: 원), []미부담		식사 제공 여부: 제공([]조식, []중식, []석식), []미제공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: []부담(부담금액: 원), []미부담			
기타						

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(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)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(변경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1.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,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·규모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기 바랍니다.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동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- ①~④란은 사업장이 1개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. 특히 가사사용인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개요에서 ⑤란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, ⑥란의 사업장명 및 ⑦란의 대표자는 세대주 성명을 적기 바랍니다.
- ⑧란의 업종은 업종코드설명집을 참고하여 적되, 그 업종의 세세분류까지 적어야 하고 업종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담 후 적습니다.